

『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0년 12월 8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0년 12월 8일

라. 상정일자 : 2010년 12월 20일

제15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강 재 용

나. 제안이유

- 전문화·세분화된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기능직 공무원 결원 해소 및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하여 일부 정원을 조정코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정원의 총수 : 1,552명(변동없음)
- 직종별·직급별 정원조정
 - 정무직 : 1명(변동없음)

- 일반직 : 1,200명 → 1,204명(+4명)
 - 3급 : 1명(변동없음)
 - 4급 : 10명(변동없음)
 - 5급 : 77명(변동없음)
 - 6급이하 : 1,112명 → 1,116명(+4명)
- 별정직 : 27명(변동없음)
- 연구직 : 2명(변동없음)
- 지도직 : 33명(변동없음)
 - 지도관 : 3명(변동없음)
 - 지도사 : 30명(변동없음)
- 기능직 : 289명 → 285명(△4명)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4조, 제29조 및 제30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배 정 미

○ 본 조례안은

-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의거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임

○ 주요 내용은

- 기존의 총정원 1,552명으로 변동이 없으며, 직종별·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1,200명에서 1,204명으로 4명 증원하고, 기능직 289명에서 285명으로 4명 감하였음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기능직 공무원 결원 해소 및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타 법령에 저촉사항 없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